

2019년도 제2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9. 25.(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위원, 임진모 위원, 전용준 위원(분과위원장)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2건(안전번호 제 2019-120874호~120973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19년 공개된 국내 및 국외 영상저작물로서 그 중에는 영화 봉오동 전투(2019), 영화 변신(2019), 영화 어린 의뢰인(2019), 영화 안녕 베일리(2019), 영화 토이 스토리4(2019)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안은 그 어느 것이나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B 위원 : 120874호부터 120973호까지 100건의 경우 <안녕 베일리> <토이스토리4> 등 최신 영화에 대한 무단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 C 위원 : 본건 심의대상물은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복제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외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9년 제201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25.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박성호

위원 임진모